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·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문금주·정점식·이병진

박대출 · 서일준 · 김태호

김종양 • 주철현 • 서미화

양부남 • 서천호 • 이종욱

박희승 · 허성무 · 조계원

김 현 • 민형배 • 김남근

임미애 · 박성민 · 서영석

전진숙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」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·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74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

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에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26. 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조세특례의 제한) ① 이	제3조(조세특례의 제한) ①		
법, 「국세기본법」 및 조약과			
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			
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			
수 없다.			
1. ~ 25. (생 략)	1. ~ 25. (생 략)		
<u><신 설></u>	26. 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」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